

[일련번호 : 1]

## 경기도체육회 기관경고

[제 목] 결산서 및 정산보고서 불일치

[소속기관] 경기도수영연맹

[내용]

### 1. 업무개요

경기도수영연맹(이하 “연맹”이라 한다.)은 「경기도수영연맹 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에 따라 이사회, 대의원총회와 같이 회의체를 구성하여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각 회의체별 역할과 기능을 부여하고 있다.

### 2. 관련법령 및 판단기준

연맹「규약」 제7조(총회의 구성 및 기능), 제45조(회계연도), 제46조(예산편성 및 결산), 제47조(회계감사등)에 따라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이내에 회의체의 기능에 맞도록 철차를 갖추어 결산을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연맹은 당해연도 결산을 실시하면서 회계감사의 확인을 거쳐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대의원총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의결의 절차를 거쳐 결산을 확정하고 있다. 결산의 시기에 관하여는 연맹 「규약」 제46조<sup>1)</sup>에서 정하고 있는데,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연맹은 행정편의상 회계연도 종료 이전 12월중 결산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결산서가 작성, 총회에 안건으로 상정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1) 연맹 「규약」 제46조(예산편성 및 결산) ②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도수영연맹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결산서(재산증감사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작성하여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로 인해 [표1]과 같이 대의원총회 결산서에 표기된 금액과 실제 보조사업에서 회계처리된 금액간의 상이한 부분이 발생하였고, 감사 전 제출한 수감자료 또한 사업별 결산금액이 맞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규약에서 정한 결산시기에 위배되어 연맹의 행정편의에 의한 행위로 판단되며, '회계연도의 경영상태를 정산하여 단체의 재정상태를 명확히 하는 절차로서의 결산'에 대한 회계적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위배한 것으로 봄이 인정된다.

**[표1] 결산금액 불일치 현황**

구분	사업명	금액(천원)		
		수감자료	결과보고	결산서
2021	경기도종목단체 ****	**,***	**,***	**,***
	**** 출전비	**,***	**,***	**,***
	****	**,***	**,***	**,***
2022	경기도종목단체 ****	**,***	**,***	**,***
	**** 출전비	***,***	***,***	***,***
	****	**,***	**,***	**,***
2023	**** 출전비	**,***	**,***	**,***
	**** 출전비	***,***	***,***	***,***
	전국****	**,***	**,***	**,***

### [관계기관 의견]

결산시기에 대하여 매년 초의 경우 각종 행사 등으로 업무가 과다하여 편의상 회계연도 종료 전 결산을 실시하였다고 인정하였으며, 동 사항에 대하여 차후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답변하였다.

### [조치사항] 경기도수영연맹 회장은

차후 연맹 결산시 「규약」에서 정한바에 따라, 회계연도 종료 후 적정한 결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지적사항 관련 감사 수감법위인 '21~'23년도 결산의 재검토 및 결산서 수정 등 조치 후(총회 보고 및 심의·의결) 본회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

## 경기도체육회 주의조치

[제 목] 계약 및 회계처리 부적정

[소속기관] 경기도수영연맹

[내용]

### 1. 업무개요

경기도수영연맹(이하 “연맹”이라 한다.)은 국도비를 비롯한 모든 보조금을 집행할 때에는 의사결정을 시작으로 원인행위를 결정하고 지출을 실행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와 증빙을 근거로 회계를 처리하고 관리해야 한다.

### 2. 관련법령 및 판단기준

경기도체육회(이하 “본회”라 한다.) 「회계규정」(이하 “회계규정”이라 한다.) 제4조(일반 원칙), 제42조(지출원인 행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부가가치세법」 제31조(거래징수)<sup>2)</sup>, 제32조(세금계산서 등)<sup>3)</sup>,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1조(지방보조금 사용 방법)<sup>4)</sup> 등에 의거 보조금 집행 및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고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2) 「부가가치세법」 제31조(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⑧ “생략”

4) 「보조금 관리기준」 제11조(지방보조금 사용 방법) ① “생략”  
② 지방보조금 지출거래 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⑥ “생략”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라 한다.),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공사·물품·용역이 필요할 시에는 관련 법률을 확인하여 절차에 맞게 계약이 이루어져야 하며, 계약행위는 「지방계약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연맹은 보조금을 집행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제규정, 지침을 확인하고 적법한 절차와 근거를 바탕으로 보조금을 집행하고 회계처리를 실시하여야 하나 다음과 같이 감사결과 문제가 확인 되었다.

#### 가. 분할계약 및 계약처리 부적정

연맹은 보조사업 계획(안)에 따라 사업을 운영하며 보조금을 집행 할 경우 지침 및 관계법령에 따라 회계처리 해야 하나 [표1]과 같이 분할계약 및 회계처리에 부적정한 사항이 확인되었다.

또한 집행을 할때에는 지출을 위한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나 자료가 객관적으로 증빙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이 되기도 하고 추후 증빙자료를 추가하지도 않고 회계처리를 마무리하였다.

**[표1] 분할구매 등 계약 및 회계처리 부적정 현황**

순	사업명	지출내역	금액(원)	업체명	지적사항
1	2021 ****	방역용품	* ,***,000	****	분할구매, 계약서 미작성
2	2021 ****	방역용품	* ,***,000	****	분할구매, 계약서 미작성
3	2021 ****	훈련용품	* ,***,000	****	계약서 미작성
4	2021 ****	용품비	* ,***,000	****	계약서 미작성
5	2021 ****	용품비	* ,***,000	****	계약서 미작성
6	2021 ****	구급차	* ,***,000	****	분할구매, 계약서 미작성

순	사업명	지출내역	금액(원)	업체명	지적사항
7	2021 ****	방역	* ,***,000	****	분할구매, 계약서 미작성
8	2021 ****	청소용역	* ,***,000	****	계약서 미작성
9	2021 ****	방역	* ,***,000	****	계약서 미작성
10	2021 ****	방역	* ,***,000	****	계약서 미작성
11	2021 ****	청소용역	* ,***,000	****	계약서 미작성
12	2022 ****	운영용품	* ,***,000	****	계약서 미작성
13	2022 ****	사업비	** ,***,000	****	계약서 미작성
14	2022 ****	제작비	** ,***,000	****	계약서 미작성
15	2022 ****	용품비	* ,***,000	****	계약서 미작성
16	2022 ****	용품비	* ,***,000	****	계약서 미작성
17	2022 ****	기타운영비	* ,***,000	****	계약서 미작성
18	2023 ****	제작비	** ,***,500	****	계약서 미작성
19	2023 ****	제작비	** ,***,000	****	계약서 미작성
20	2023 ****	훈련복	* ,***,000	****	계약서 미작성
21	2023 ****	유니폼	* ,***,000	****	계약서 미작성
22	2023 ****	유니폼	* ,***,000	****	계약서 미작성

#### 나. 원인행위 및 지출결의서 미운영 등 관리 소홀

연맹은 보조사업의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절차에 따라 사전에 지출원인행위를 실시하고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지출을 완료하여야 하나 수감기간인 `21~`23년도 보조사업에서 지출원인행위, 지출결의서가 이루어지지 않고 집행하거나 사후 처리하였고 보조사업 1개의 예산의 지출원인행위와 지출결의서를 1회에 실시한 후 집행하는 등 문제가 확인되었다.

## [조 치 사 항] 경기도수영연맹 회장은

보조금 집행 등 회계처리에 있어 관계법령에 어긋나지 않도록 회계를 담당하는 임직원에게 정기적으로 회계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 문제로 확인된 사항에 대해 증빙자료 등을 보충하여 이를 본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향후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3]

## 경기도체육회 주의조치

[제 목] 대의원의 임원(감사) 선임 운영 부적정

[소속기관] 경기도수영연맹

[내용]

### 1. 업무개요

경기도수영연맹(이하 “연맹”이라 한다.)은 「경기도수영연맹 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에 따라 20\*\*.\*\*.\*\*. \*\*시수영연맹 회장(심\*\*)을 행정감사로 최초 선임하였고, 20\*\*.\*\*.\*\*. 개최한 ‘20\*\* 정기대의원총회’ 및 20\*\*.\*\*.\*\*. 개최한 ‘20\*\*년도 임시대의원총회’시 동일인에 대한 행정감사의 연임을 두차례 의결한 바 있으며, 위 연임 의결에 따라 20\*\*년 현재까지 행정감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동 행정감사의 경우 금번 수감범위 기간인 최근 3년간(‘2\*~‘2\*년) 이사회 및 총회에 참석하여 감사보고를 하는 등 감사의 직무를 수행하였는데, 특히 ‘총회’의 경우 직접 참석하여 서명부에 서명한 것으로 비추어 총회 성원에 영향을 미치거나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된다.

### 2. 관련법령 및 판단기준

연맹의 ‘감사’(행정·회계)의 경우 「규약」 제22조제6항에 따라 ‘총회’에서 선임하여야 하며, ‘행정감사’의 경우 경기도체육회(이하 “본회”라 한다.) 「경기도 종목단체 규정」 제22조제6항<sup>5)</sup>에 따라 연맹 대의원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 「규약」제7조제6항에서는 대의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연맹의 임원(행정감사)이 되는 경우에는 대의원의 자격을 상실하도록 하고 있는데,

5) 본회 「경기도종목단체규정」 제22조(임원의 선임) ⑥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며, 제7조제1항의 대의원중에서 행정 감사 1명을 선임하고,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회계감사 1명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때에는 해당 단체에서 추천한 부회장 1명이 연맹의 대의원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감사의 임기’와 관련하여서는 「규약」 제25조에서 정하고 있는데,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단, 회계감사는 연임 횟수를 제한하지 않음) 이에도 불구하고, 연맹의 임원은 본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18조<sup>6)</sup> 및 제20조<sup>7)</sup>에 따라 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를 인정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여 1회 연임 후에도 본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지속적인 행정감사의 직무수행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연맹은 연맹의 대의원을 임원(행정감사)로 선임하면서 관련 「규약」 및 본회 「경기도종목단체규정」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 가. 대의원의 임원(행정감사) 선임 운영 부적정

연맹은 20\*\*.\*\*.\*\*. \*\*시수영연맹 회장(심\*\*) (이하 “의왕시 회장”이라 한다.)을 행정감사로 최초 선임하였으며, 2024년 현재까지 지속적인 총회의 연임 의결을 통해 행정감사로 직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대의원을 연맹의 임원으로 선임시에는 「규약」 제7조제6항에 따라 해당인의 대의원 자격이 상실되며, 해당 단체에서 추천한 부회장 1명이 대의원이 되어야 한다는 조항에도 불구하고, 의왕시 회장의 경우 행정감사로 선임되거나 연임이 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총회’에 참석하여

6) 본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18조(심의절차) ①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국제스포츠기구 임원진출 시 임원경력이 필요한 경우  
2. 재정기여, 주요 국내외 대회성적, 단체평가 등 지표를 계량화하여 평가한 결과 그 기여가 명확한 경우  
②~⑤ “생략”

7) 본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0조(재심의요구) ①~③ “생략”

“\*\*시 회장’란에 참석서명부를 작성하거나 총회 성원에 포함되었으며, 의결권 또한 행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감사’의 경우 「규약」 제18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임원에 범주에 속해 있으며, 위 관련규정에 따라 \*\*시 회장 즉, ‘시·군수영연맹의 장’으로 대의원의 자격을 가진자가 임원이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그 자격이 상실되어 당시 \*\*시 회장인 ‘심\*\*’의 대의원총회에 대의원으로의 구성 및 총회 참석은 불가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수감범위인 “\*\*~\*\*년도 대의원총회 참석서명부를 살펴보면 ‘심\*\*’가 참석 서명부에 직접 서명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는 자격 없는자의 총회 구성에 해당함이 타당하다.

[표1] ‘21~’23년도 대의원총회 참석서명부(행정감사)

구분	개최일	행정감사			비고
		성명	참석서명부*		
20**	‘**.**.**	심**		회장	정기
20**	‘**.**.** (비대면 zoom회의)	심**		회장	정기
20**	‘**.**.**	심**		회장	정기
	‘**.**.**	심**		회장	임시

\* 20\*\*~20\*\* 대의원총회 참석서명부 부분 발췌

## 나. 감사의 연임 부적정

“\*\*시 회장’(심\*\*)은 20\*\*.\*\*.\*\*. 행정감사로 최초 선임되었으며, 임기가 종료된 시점인 20\*\*년 정기대의원총회(20\*\*.\*\*.\*\*.)시 해당인의 연임이 의결되었다. 이후 다시 임기가 종료된 20\*\*년, 연맹은 임시대의원총회(20\*\*.\*\*.\*\*.)를 개최하여 해당인의 연임을 재차 의결한 바 있다.

‘감사’의 경우 「규약」 제25조제1항에 따라 그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이후 연임 횟수의 제한의 예외를 인정 받기 위하여는 「규약」 제25조의2 제4항에 따라 본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임원 심의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즉, “\*\*시 회장”(심\*\*)의 경우 20\*\*년 행정감사로 최초 선임 이후 20\*\*년 정기대의원총회시 연임이 1회 의결된 것으로 보아, 20\*\*년 재 연임시에는 「규약」 제25조의2 제4항에 따라 본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연임심의를 거쳐야 했음이 타당하다.

### [조 치 사 항] 경기도수영연맹 회장은

가. 「규약」에서 정한 대의원의 임원 선임 관련 규정에 따라 자격이 상실된 자의 총회 구성 및 의결권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본회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또한, 임원의 임기와 관련하여 해당 대상에 대하여는 필히 본회 스포츠 공정위원회의 임원심의를 거쳐 연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에 대한 검토 및 준수를 당부드리며, 현 행정감사에 대한 본회 임원심의 절차 이행 등 조치하신 후 그 결과를 본회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4]

## 경기도체육회 주의조치

[제 목] 임원의 선임 절차 부적정

[소속기관] 경기도수영연맹

[내용]

### 1. 업무개요

경기도수영연맹(이하 “연맹”이라 한다.)은 20\*\*.\*\*월 정기이사회를 서면결의로 개최하였고, 20\*\*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에 관한 사항등 총 3건의 부의 안건을 상정하여 재적임원 2\*명 중 2\*명이 참석하여 의결하였다.

이후 약 3개월 후인 20\*\*.\*\*월 긴급이사회를 서면결의로 개최하였는데, 당시 의결에 참여한 임원의 경우 재적임원이 2\*명으로 정기이사회 대비 1명의 증원이 있었으며, 부회장 1명과 이사 1\*명 총 1\*명(회장 1명 제외)의 교체가 확인되었으며, 20\*\*.\*\*월과 20\*\*.\*\*월 각각 2명, 4명의 임원을 보선을 통해 선임한 바 있다.

### 2. 관련법령 및 판단기준

「경기도수영연맹 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 제22조에서는 연맹 임원에 대한 선임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1항에서는 연맹의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총회의 의결로 선임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하여 동조 제2항에서 정한 기한내(위임 받은 이후 첫 번째 이사회 개최 직전까지) 임원 선임이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이 경우 차기 총회에서 선임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임원의 ‘보선’에 관하여는 동조 제5항에 따라 부회장과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회장이 추천한 자를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차기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총회'에서 직접 선임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회장에 임원 선임권한을 위임하였거나, 결원이 발생하여 이사회에서 보선을 통해 임원을 선임할 경우 차기 총회에 선임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20\*\*.\*\*.\*. 연맹은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여 당일 임기를 시작하는 現 회장(김\*\*)에게 임원의 선임권한을 위임하였다. 이후 연맹은 20\*\*.\*\* 월 긴급이사회를 서면으로 개최하였는데, 당일 참석한 임원을 살펴보면, 회장을 제외한 총 1\*명(부회장 \*\*명, 이사 \*\*명)<sup>8)</sup>의 임원이 \*\*.\*\*.\*.경 서면으로 개최한 정기이사회 대비 교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새로이 당선된 現 회장(김\*\*)에 임원의 선임권한을 위임한 것을 근거로 신규로 선임한 부회장과 이사로 추정된다.

위와 같은 경우, 「규약」 제22조제1항에 따라 '총회'의 의결로 선임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한 경우로 그 선임결과를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함이 타당하나, 차기 총회인 20\*\*.\*\*.\*.(비대면 화상회의) 임시대의원총회시 위 1\*명에 대한 선임결과 보고 건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20\*\*.\*\*.\*.경 서면결의로 진행된 긴급이사회에서는 \*명의 이사<sup>9)</sup>에 대한 보선 안건이 의결되었는데, 이 또한 「규약」 제22조제5항에 따라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차기 총회에 이를 보고하는 것이 타당하나, 차기 총회인 20\*\*.\*\*.\*. 개최된 총회시 선임결과에 대한 보고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20\*\*.\*\*.\*.경 개최된 긴급이사회에서 선임한 이사 \*명의 경우에도 차기 총회에 보고한 사항은 확인되지 않는다.

8) 부회장(조엽, 이상 1명), 이사(최준호, 양효성, 박영화, 남유선, 김혜영, 유해종, 김명환, 조은경, 송정례, 권우정, 노충섭, 이상 11명)

9) 이사(김정임, 한옥수, 이상 2명)

따라서, 20\*\*년 회장에 임원 선임권한을 위임하고 신규로 선임된 1\*명의 부회장 및 이사와 이사회를 통해 선임된 \*명(20\*\*년 \*명, 20\*\*년 \*명)의 경우 「규약」에서 정한 선임 후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조 치 사 항] 경기도수영연맹 회장은

향후 임원선임시 「규약」에서 정한 선임 절차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이행되도록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부회장 및 이사의 경우 再 선임과정을 거치는 등 조치하시고, 그 결과를 본회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5]

## 경기도체육회 주의조치

[제 목] 규약 및 기타 규정 운영 및 관리 미흡

[소속기관] 경기도수영연맹

[내용]

### 1. 업무개요

경기도수영연맹(이하 “연맹”이라 한다.)은 「경기도수영연맹 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에 따라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에 따라 모든 사무를 처리하고 있다.

### 2. 관련법령 및 판단기준

연맹 「규약」 제52조(규정변경), 제53조(규정제·개정 등), 제54조(규정의 해석)에 따라 연맹은 경기도체육회(이하 “본회”라 한다.) 정관과 제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본회 「경기도종목단체 규정」 제52조<sup>10)</sup> 및 제53조<sup>11)</sup>에 따라 규약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연맹은 본회 각 제규정을 준용하여 「규약」, 「회장선거관리 규정」, 「스포츠 공정위원회 규정」을 제정 및 개정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본회 각 제규정의 변경사항 발생시 연맹은 해당 절차에 따라 개정하여야 한다.

10) 본회 「경기도종목단체규정」 제52조(규약변경) ① 도종목단체가 규약을 변경할 때에는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의결하고 본회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본회가 도종목단체의 승인에 앞서 이에 대한 개정 또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이에 대한 반영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종목단체는 이에 따라야 한다.

11) 본회 「경기도종목단체규정」 제53조(규약 등 제정·개정) ① 도종목단체는 이 규정에 따라 규약을 제정·개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이외에 해당 도종목단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종목단체의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규정을 제정·개정 한다.  
③ 도종목단체의 규약 및 규정(사무국 관련 규정 포함)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금번 정기종합감사시 확인결과 연맹은 본회 제규정 변경사항에 대한 안내<sup>12)</sup>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등 연맹 규약 및 제규정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표1] 경기도수영연맹 규약 및 규정 제·개정 현황**

순	구 분	제개정 일자	비고
1	경기도수영연맹 규약	2020.11.20. 개정 (2020.12.30. 승인)	
2	회장선거관리 규정	2020.11.12. 개정 (2020.11.19. 승인)	
3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2019.06.07. 개정	

이와 더불어, 연맹은 위 3개 규정외 별도의 제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고 있어 연맹 운영에 필요한 인사, 회계, 민원사무처리, 대회운영,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무분별한 연맹 운영이 우려되는 실정으로 조속한 규정 제정을 통한 체계적인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조치사항] 경기도수영연맹 회장은**

회계 규정, 민원사무처리 규정 등 조직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비롯하여 연맹에서 추최·주관하는 대회의 운영 규정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 제정되어 운영중인 규약 및 규정을 조속히 개정하여 본회 공정감사실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① 경기도체육회 종목육성팀-394(2023.02.24.) 「경기도종목단체 규정 개정 알림」

② 경기도체육회 종목육성팀- 47(2024.01.09.) 「회원종목단체 규약 및 규정 제·개정 관련 행정사항 안내」

[일련번호 : 6]

## 경기도체육회 개선조치

[제 목]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 구성 규정 개선

[소속기관] 경기도수영연맹

[내용]

### 1. 업무개요

경기도수영연맹(이하 “연맹”이라 한다.)은 「경기도수영연맹 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에 따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20\*\*.\*\*.\*\*. 개최된 ‘20\*\* 정기대의원총회’시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 선임건에 대하여 의결하고 \*명의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을 선임하였다.

이후 연맹은 기 구성하였던 위원의 사임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20.\*\*.\*\*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 추가 선임한 바 있다.

### 2. 관련법령 및 판단기준

「규약」 제38조에서는 ‘스포츠공정위원회’ 설치 목적 및 위원 구성 관련 자격요건과 절차 등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는데, 위원 구성시에는 동조 제2항에 따라 ‘총회’에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총회의 의결로 선임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한 경우 외부인사가 과반수 이상 포함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심의와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체육회(이하 “본회”라 한다) 「경기도종목단체규정」 제38조제2항<sup>13)</sup> 또한 동일한 절차를 명시하고 있으며, 본회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 제4조제3항에서도 ‘총회’에서 선임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13) 본회 「경기도종목단체규정」 제38조(스포츠공정위원회) ②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로 선임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한 경우, 회장은 외부인사가 과반수 이상 포함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심의와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선임하여야 한다.

1. ~ 4. “생략”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20\*\*.\*\*.\* 정기대의원총회 및 20\*\*.\*\*.\* 개최된 임시대의원총회시 연맹은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을 구성하였다.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 구성시 그 절차에 대하여 연맹 「규약」과 별도로 제정한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데, 「규약」 제38조제2항에서는 각 자격기준에 따라 '총회'에서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나, 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 제4조 제3항에서는 회장이 위촉하되, 위원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 절차가 서로 상이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2]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 관련 연맹 규정별 내역**

구 분	조 항	내 역	비고
「규약」	제38조(스포츠공정위원회) 제2항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u>총회에서 선임한다</u> . 다만, 총회의 의결로 선임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한 경우, 회장은 외부인사가 과반수 이상 포함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심의와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선임하여야 한다. 1.~4. “생략”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	제4조(구성) 제3항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u>회장이 위촉하되, 위원장은 이사회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u> . 1.~4. “생략”	

위원 구성에 대한 규정 내용이 상이함에 따라 향후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의결사항에 대한 절차상 하자 발생이 우려됨으로 상기 두 조항에 대하여 개정을 통한 동일한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조 치 사 항] 경기도수영연맹 회장은

연맹 「규약」 및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상 상이한 위원 구성에 대한 조항 등 전반적인 규정 검토를 통해 서로 상충되는 조항에 대하여는 동일하게 개선하여 향후 절차상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여 주시고, 조치 결과를 본회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7]

## 경기도체육회 개선조치

[제 목] 전자문서 및 기록물 관리 미흡

[소속기관] 경기도수영연맹

[내용]

### 1. 업무개요

경기도수영연맹(이하 “연맹”이라 한다.)은 「경기도수영연맹 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에 따라 모든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 및 보존에 관한 사항을 관리해야 한다.

### 2. 관련법령 및 판단기준

연맹은 「규약」 제50조(사무국의 운영 등) 제2호에 따라 모든 기록물을 전자적 관리를 통해 보존하여야 한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연맹은 현재 문서수발신대장을 직접 서면으로 작성 및 관리하고 있으며, 문서발송시 ‘문서24’<sup>14)</sup>를 활용하여 공문 등 발송 후 관련 첨부서류의 경우 연맹(담당자) PC에 저장하여 보존하고 있다.

‘문서24’의 경우 일정기간 도래시 첨부서류가 자동 소멸되어 기록물 보존에 상당히 취약하다고 할 수 있으며, 관련서류를 연맹 담당자 PC에 보존하고 있으나 기능 고장 등으로 보존의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연맹은 현재 경기도체육회관내 입주 단체 종목으로 사무직원이 상주해 있는 종목단체로 전자문서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

14) 행정·공공기관이 인터넷으로 전자문서를 제출하거나 받을 수 있는 민·관간 양방향 전자문서유통 서비스 (행정안전부 제공)

**[조 치 사 항] 경기도수영연맹 회장은**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와 과도한 행정적 소모가 발생하지 않도록 본회 전자  
문서시스템을 사용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8]

## 경기도체육회 개선조치

[제 목] 경영공시 이행 부실

[소속기관] 경기도수영연맹

[내용]

### 1. 업무개요

경기도수영연맹(이하 “연맹”이라 한다.)은 「경기도수영연맹 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에 따라 연맹의 경영 투명성을 위해 경영에 관한 중요 정보를 일반 국민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하여야 한다.

### 2. 관련법령 및 판단기준

연맹 「규약」 제46조(예산 편성 및 결산), 제53조(규정 제·개정 등) 제56조(경영공시)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연맹은 규약 및 제규정, 결산서, 이사회 및 총회 결과, 외부평가, 감사결과 등을 공시하여야 한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연맹은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규약, 임원현황 등을 공개하고 있으나 예결산(안) 등을 홈페이지나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시하여 함에도 불구하고 공시를 실시하고 있지 않다.

### [조치사항] 경기도수영연맹 회장은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규약」에서 정한 공시항목 및 회장이 정한 사항들에 대하여 공시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9]

## 경기도체육회 권고조치

[제 목] 임직원 수당지급

[소속기관] 경기도수영연맹

[내용]

### 1. 업무개요

경기도수영연맹(이하 “연맹”이라 한다.)은 경기도체육회(이하 “본회”라 한다)를 통해 국도비 보조금을 받아 보조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보조금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성실히 이행하여 한다.

### 2. 관련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 기준」, 「기금운용 계획 수립기준」,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집행 지침」에 따라 단체의 임직원에게는 수당(인건비)를 지급 할 수 없다. 다만, 강사비의 경우 단체에서 급여나 대가를 받지 않는 임직원에게 강사비 예산의 50%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연맹은 국도비를 보조받은 대회에서 임직원을 심판, 시설유지관리요원, 운영요원 등으로 배정하고 과업을 맡긴 후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여 보조사업을 수행하였다.

이는 보조금과 관련된 기준이나 지침에는 다소 상이 할 수 있는 지급으로 강사비의 경우 강사비 지급기준을 따라 지급하되 강사비 예산의 50% 이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수당의 성격이 심판의 경우 전문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한수영연맹에 심판 요청을 통해 충분히 지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요청을 하지 않고 내부 임직원을 활용하여 운영하였다.

**[조 치 사 항] 경기도수영연맹 회장은**

국도비 보조를 통해 대회 개최 등 사업운영시 보조금 집행기준 및 관련 법령 준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0]

## 경기도체육회 권고조치

[제 목] 재정보증보험 미가입

[소속기관] 경기도수영연맹

[내용]

### 1. 업무개요

경기도수영연맹(이하 “연맹”이라 한다.)은 「경기도수영연맹 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에 따라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재산 및 회계관련 조항을 두어 규정에 딸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 2. 관련법령 및 판단기준

연맹「규약」제40조(재산의 구분), 제41조(재원), 제42조(잉여금의처리), 제43조(재산의 관리), 제44조(재산의 대여 및 사용), 제45조(회계연도), 제46조(예산편성 및 결산), 제47조(회계감사 등) 재산 및 회계조항을 두고 관리해야 하며 필요시 회계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연맹은 국도비를 비롯하여 년간 5억원 이상의 예산을 운영하는 조직으로 회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규정도 제정되어있지 않았고 회계관계 직원에 필요한 재정보증보험 조차 가입되어있지 않았다.

### [조치사항] 경기도수영연맹 회장은

회계와 관련된 연맹 임직원의 재정보증보험을 가입할 것을 권고합니다.